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대상이 지하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위 기준(고시)을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하공간”의 정의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토록 하고, “침수취약지구” 용어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사용한 용어로 대체함(안 제1조의1)
- 동 기준 적용 범위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토록 함(안 제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부처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00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 개정안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1 제1호부터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공간”이라 함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

- 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소방방재청장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5.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써,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써,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따른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시 적용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높이 확보) 저지대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출입구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 1(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1 조 의 1(정 의)
1. “지하공간”이라 함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등을 말한다.	1. _____ _____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_____.
2. “침수취약지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2. 소방방재청장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다음 _____.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가. _____.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나. _____.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써,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5. _____

법령정보

현행	개정안
<p>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6~8. (생략) (신설)</p> <p>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침수취약지구 내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따른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시 적용한다.</p> <p>제26조(반지하 주택의 출입구 높이 확보) 저지대에 반지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출입구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p>	<p>_____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_____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_____.</p> <p>6~8. (현행과 같음)</p> <p>9.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p> <p>제2조(적용범위) _____ 소방방재청장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 _____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_____.</p> <p>제26조(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높이 확보) 저지대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_____.</p>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2 - 23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후변화로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침수흔적도를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원적인 재해저감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과거의 기록을 갱신하는 기상이변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재해가 빈발하고 대규모화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동 업무를 지속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침수흔적도를 활용하고자하는 자가「침수흔적확인서」발급을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 19조 제3항)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지내 및 상·하류 주변지역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기간 시설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예방적 성격의 꼭 필요한 보호적 규제인 만큼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제74조)

법령정보

자연재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 규정에 따라 침수흔적도를 활용하고자하는 자가 침수흔적 확인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삭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 규정에 따라 침수흔적도를 활용하고자하는 자가 침수흔적 확인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별표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가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 <삭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절차·방법 신설〉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2 - 23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후변화로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침수흔적도를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원적인 재해저감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침수흔적확인서」민원서류 발급제도가 마련되어,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안 제4조의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침수흔적도 등(이하 “침수흔적확인서”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정보

1. 침수구역, 침수심, 침수기간 등의 침수피해 내용
 2. 침수구역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이력 또는 침수흔적도를 확인하여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의6(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침수흔적도 등(이하 “침수흔적확인서”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침수구역, 침수심, 침수기간 등의 침수피해 내용 2. 침수구역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침수피해이력 또는 침수흔적도를 확인하여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 호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호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소방방재청장에 위임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정보

제2조(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른 방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2.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3. 「도로법」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4.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5.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소방방재청 훈령 제29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제3조(재검토키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00.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 호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호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제4호에서 소방

법령정보

방재청장에게 위임한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2.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3. 「도로법」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4.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5.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소방방재청 훈령 제29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00.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